

충청북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(안)

검토보고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4년 12월 22일

- 회부일자 : 1994년 12월 22일

3. 제정이유

도로굴착, 복구와 관련한 부담금의 징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복구 공사의 시행과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로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등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○ 부담금등 징수 (조례 제3조)

- 도로굴착허가시 복구금액을 산출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

○ 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(조례 제4조)

- 복구 표준단면에 의해 복구금액 산출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복구

○ 복구공사시행(조례 제5조)

-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체결하여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, 군수 또는 원인자가 직접복구

○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(조례 제6조)

- 사안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하거나 추징

○ 준수사항 (조례 제7조)

- 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을 이행

○ 복구원인자 확인 (조례 제9조)

- 정당한 권한 없는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원인자를 확인, 추적하여 부담금 추징

→ 긴급복구 필요시 우선 자체복구후 확인, 추적하여 부담금 추징

5. 검토의견

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굴착 및 복구와 관련한 부담금징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복구공사의 시행과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등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

" 따로 볼임 "

불 임 : 조례안 1부 .